

질의와 회신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1.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과다 계상분의 환급여부 질의

|| 질 의 ||

- △△산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공사를 총액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07' 4월에 계약하고 계약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설계내역서를 근거로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였고 1회 설계변경(금액변동 없음)후 '07 8월에 준공하였음
- ○○구청 자체감사 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이윤부분이 과다 계상된 것이 지적됨에 따라 (이윤 산정 시 재료비 비목을 제외하고 계상되어야 했으나 본 공사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계상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과다 계상된 이윤의 차액분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을 때 환급의무여부

|| 회 신 ||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서류상 단가의 과다, 과소산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아니한바,
-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상 이윤을 과다 계상하고 계약상대자 역시 관련법령 등에 의한 제경비율을 과다 계상하였다하여 입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확정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질의와 회신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 상호모순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 입찰하여 계약 체결한 “수영장 체육관 개보수공사”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도면에는 기존타일 및 방수제철거 후 타일신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발주처에서 받은 물량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는 총액입찰이라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계약법령상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도면과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2항에 의하면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법인대표로 있는 경우와 ②지방의원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 합산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수의계약의 범위가 전자전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법인의 대표로 있거나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 및 특수 관계인의 자본금 합산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이경우 수의계약의 범위는 G2B를 이용한 수의 전자견적까지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4. 제한경쟁운영요령관련 질의

【 질 의 】

□ 특히 또는 신기술이 공사전체에 적용되거나 공사의 대부분인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지 여부, 만일 공사의 대부분에 적용된 경우가 수의계약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전체공사의 몇 퍼센트 이상을 말하는 지

【 회 신 】

○ 특히 또는 신기술공법이 공사전체에 적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법이 특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서 공사설계서의 전체에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특히 또는 신기술공법 보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 또한 당해 공사의 원활한 공사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발주부서(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 설계전에 특히 또는 신기술공법 보유자와 당해공사에 대한 낙찰자에게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줄 것에 대한 각서 등을 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계약담당자가 낙찰자로 하여금 특히 또는 신기술공법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히 또는 신기술이 공사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다. 평가기준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일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특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되는 공사금액 비율이 86%(추정

질의와 회신

가격이 5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93%)이상일 경우 수의계약대상공사에 해당되며, 동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종합점수 90점(추정가격 5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95점)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시 관급·민간공사 실적인정 방법 질의

|| 질 의 ||

- 민간공사 실적인정방법에 있어서 선순위 낙찰자가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008.4.25일까지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시공 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 - 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선순위 낙찰자가 시공한 공사실적이 민간공사에 해당되어 시공실적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와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는 제출하였 으나 관련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 신고를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준공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서,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공사목적물 현장에 출장하여 준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공사의 경우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일괄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7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일괄입찰 등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나,
- 동항 동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무분별한 일괄입찰 등의 발주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서에 일괄입찰 등이 아닌 기타공사 방법으로 심의요청을 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

【 질 의 】

- 건축·건설·기계·전기 등 복합공사로서 A사(기계설비공사업 60%), B사(폐기물 기계설비업 20%), C사(일반건설업 20%)의 지분율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완료한 후 대표사인 A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나 시설물 준공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기간내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으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토목·건축부분이 아닌 기계설비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C사(일반건설업) 또는 B사(폐기물 기계설비업)를 하자보수 연대책임을 물어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와 회신

회신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 하는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하자보수이행 포함)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내용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계약방식은 계약 담당자가 입찰공고·계약서 및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질의

질의

- 질의 1)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시공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이 가능한지와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시공한 실적과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2) 입찰참가자격조건에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할 때 제출토록 명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

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제한경쟁 계약 운용요령 행안부 예규 제 257호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으로 시공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불공정한 과도한 제한이 되므로 제한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특허 또는 신기술공법을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제한 경쟁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입찰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사용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의 사용을 검토해야 하며 신기술 또는 특허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분리발주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9.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질의

|| 질 의 ||

- 입찰참가자격을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총 참여업체는 3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 도급협정 체결할 경우 전기공사의 참여업체 수는 출자비율이 높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로 결정하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 참여업체 수는 1개 업체로 하고 시공능력평가는 면허(보완)업체의 것만 평가한다고 하였을 경우
- 소방과 전기면허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소방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기공사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협정을 맺어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 제조인 입찰에 있어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

질의와 회신

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으로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 제 3자단가 계약 품목 및 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물품구매 또는 제조구매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이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것입니다.

10.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공동)계약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문화재발굴용역을 △△문화재 발굴기관과 '07. 4월에 계약 (공동이행방식 A-55%: B-45%)을 하여 '08. 3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 A업체와 B업체의 발굴면적은 당초 출자비율과 동일하고 총계약금액은 변함이 없으나 A업체의 용역지역에서 물량 증가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하여 A업체가 40%, B업체가 60% 일을 했을 때 대가지급 방법

|| 회 신 ||

-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바,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준공대가 지급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관련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와 “△△홍보관 제작설치”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설계납품에 따른 검수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원가계산을 검토 의뢰하여 일부항목의 금액조정(일부항목 단가조정, 이윤의 일부 조정)을 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해 체결하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186호「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 경우로서
- 당초 계약체결이후 과업의 증·감 발생 사항이 없고 계약조건(과업지시서 등)에 별도 조정(정산 등)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제한(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

|| 질 의 ||

- ○○광역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II - 제4항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시행 할 경우
-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한다는 의미는 폐기물처리 공장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용역발주를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가 당해 폐기물 발생 현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회신

13. 시설공사관련 질의

【 질 의 】

- ○○공사가 시행(계약) 중에 있는 『△△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인 □□종합 건설이 각 공종별로 하도급업체(2개)와 계약(발주처 → 원(일반)도급자 → 하도급자 → 덤프차량 소유자) 하여 시공하는 중,
- 토사반입과정에서 하도급을 받은 덤프차량 소유자가 운반거리를 속여(토사 채취장소를 덤프차량 소유자가 임의변경) 토사운반비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한 사유로 보아 계약상대자와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덤프차량 소유자가 운반거리를 속여 운반비용을 과다·청구한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제27호(08.03.11)「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 당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과다청구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입찰보증금 관련 질의모음

1.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로 방수공사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방수 공사는 신기술 협약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전까지 신기술 협약을 제출하도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협약을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력 업체도 아닌 업체가 투찰하여 1순위가 되었습니다.
- 업체에서 공고문을 숙지 못하고 투찰 하였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보증금을 귀속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고문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찰한 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입찰자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간위탁시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 질 의 ■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

질의와 회신

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위탁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입찰보증금 미납에 따른 압류 대상 여부 질의

|| 질 의 ||

□ ○○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 하였으나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였으며, 아울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찰위약금을 징수토록 하려하였으나 ○○청에 세입조치 하지 않아 부득이 압류절차를 따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압류대상이 해당법인, 대표이사, 이사까지인지 법인의 감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는 바, 수입금(위약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은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 해당 법인에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 · 이사 등의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수결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부서에 문의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는 해당 법인, 대표자,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 모두가 해당할 것입니다.

4.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관련 질의

【 질 의 】

- A업체가 B학교 급식용 부식구매 입찰에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치 않고 포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전화, 우편등으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A업체가 현재 같은 광역시교육청 산하 C학교에 급식용 부식을 납품중입니다. A업체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품중인 학교의 부식납품대금중 입찰보증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변호사와 상의하여 채권압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과 제재기간동안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재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당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착오로 낙찰결정에 따른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 질의

【 질 의 】

-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시스템)에 물품매각공고를 시행하고 개찰과정에서 예정가격미만 투찰로 인하여 유찰처리를 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착오로 낙찰자결정(전산시스템상)을 잘못하여 당일 민원인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낙찰무효통보(낙찰무효사유 : 예정가 이하 투찰)하면서 입찰보증금 환불에 따른 은행거래계좌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신하여 줄 것을 의뢰했으나 민원인은 전산(온비드시스템)으로 낙찰자결정을 했

질의와 회신

으면 그에 따라야지 서면으로 통보한 낙찰무효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거부중이며,

-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상기 내용의 낙찰무효 사유로 인한 유찰처리 통보와 민원인의 입찰보증금 환부에 따른 온비드에서 보유중인 계좌번호 조회를 의뢰한바 온비드에서는 민원인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업무처리절차와 구제방법 여부(참고로 전자시스템상 유찰처리시 저희 행정기관의 집금계좌로 입찰보증금이 들어오지 않고 온비드에서 직접 민원인 계좌로 환불되는 시스템 구조입니다.)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낙찰자결정방법을 최고가 낙찰제로 명시하고, 전산적으로 예정가격이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로 부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당해 입찰을 취소한 경우 입찰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환불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6.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환수여부 질의

질의

- ○○학교는 차량계약관련 전자입찰(g2b)을 완료하였으나 낙찰업체가 중복 입찰참여로 인하여 타학교 이중 낙찰에 따라 ○○학교의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92조 6항에 따라 부정당 제재처분 및 입찰보증금 환수를 하려고 합니다.
-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요청도 차일피일 미루며 납부하지 않을 의도라고 사료되는바, 부정당업자 제재후 입찰보증금 미납부관련 별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이 다른 입찰에 참가하여 각각 낙찰된 경우는 중복입찰이나 이중낙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하고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 질 의 】

- 소액수의계약건(용역)을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였는데 개찰하여 낙찰예정자에게 계약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할 수 없어 계약포기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종류는 수의계약이지만 G2B에 공고시 공고문에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는 문구와 입찰보증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여 입찰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고문에 보증금 납부를 명시한 경우는 공고문의 내용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입찰에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없고,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낙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차순위자순으로 결정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